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선<br>람 | 기 관 의 장 |
|        |         |

제569호 2018. 08. 13.(월)

## 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508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2
- 사천시 조례 제150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4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2)

## 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508호

사천시 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8월 13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###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저소득주민”을 “저소득세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저소득주민”이란”을 ““저소득세대”란”으로  
하고 “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3)

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민을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(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)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험료”를 “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“보험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저소득주민의 보험료”를 “보험료”로 하고 “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,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.”를 “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,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,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.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4)

사천시 조례 제1509호

사천시 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8월 13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

제30조제1항 중 “생활체육관련단체”를 “생활체육관련단체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”으로 하고 “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”를 “위탁하여”로 한다.

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5)

[별표 1]

##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

1. 기본사용료

| 구 분<br>시설별                 | 시 기     | 사용구분 | 기 본                   | 사 용 료(원)        |                | 비 고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평 일             | 휴 일<br>(토요일포함) |   |        |
| 사천·삼천포<br>체육관,<br>사천시유도체육관 | 조기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12,000          | 1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간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6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80,000          | 12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야간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사주체육관                      | 조기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6,000           | 7,000 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간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6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야간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9,000           | 12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5,000          | 3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사천·삼천포<br>종합운동장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3시간)               | 120,000         | 15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3시간)               | 160,000         | 25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수영장<br>(실내)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300,000         | 50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500,000         | 80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읍면동지역<br>축구장   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3시간)               | 80,000          | 10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체육이외 | 1회(3시간)               | 100,000         | 150,000        |   |        |
| 사동야구장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3시간)     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궁 도 장                      | 1일(1사대)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인공암벽장  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일)  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풋 살 구 장                    | 1일      | 체육경기 | 1회(2시간)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족 구 장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     | 체육경기 | 1회(2시간)<br>1면당        | 20,000          | 25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체      | 체육경기 | 1회(2시간)<br>3면당        | 50,000          | 70,000         |   |        |
| 테니스장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     | 인조   | 체육경기<br>1회 2시간<br>1면당 | 7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| ※ 단 체 는<br>같은 동호<br>회나 같은<br>소속의 구<br>성원이 10명<br>이상인 경<br>우에 적용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마사   | "                     | 5,000           | 6,000          |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체      | 인조   | 체육경기                  | 1회 2시간<br>/ 3면당 | 20,000         |   | 3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마사   | 체육경기                  | 1회 2시간<br>/ 3면당 | 10,000         |   | 15,000 |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6)

## 2. 전용사용료(종합운동장, 체육관, 유도체육관,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)

| 사용시간별    | 사 용 료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연 20회 이내 | ○ 기본사용료 × 사용 회수       |        |
| 연 20회 초과 | ○ 기본사용료 × 초과 회수 × 0.9 | 10% 할인 |
| 연 30회 초과 | ○ 기본사용료 × 초과 회수 × 0.8 | 20% 할인 |

## 3. 연습사용료

| 시 설 별         | 구분 | 기준     | 사 용 료    | 비 고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체육관,<br>유도체육관 | 개인 | 1회 2시간 | 1,000원   |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/2 |
|               | 단체 | 1회 2시간 | 1명당 800원 |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/2 |
| 종합운동장         | 단체 | 1회 2시간 | 1명당 800원 |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/2 |
| 궁도장           | 개인 | 1회 2시간 | 2,000원   | 1사대 기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단체 | 1회 2시간 | 1명당 800원 | 1사대 기준           |
| 인공암장          | 개인 | 1회 2시간 | 1,000원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단체 | 1회 2시간 | 1명당 500원 |                  |

※ 단체연습 :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

## 4. 부대시설 사용료

| 구 분     | 기 준             | 사 용 료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앰프시설    | 1일 1회<br>(8시간내) | 20,000원   | 종합운동장, 체육관, 유도체육관,<br>수영장, 축구장 등 동시 적용 |
| 전기 및 조명 | kw              | 기본료+실제사용료 | 기본료 1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냉·난방    | 1일              | 기본료+실제사용료 | 기본료 3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7)

## 5. 수영장 이용료

| 구 분     | 이용자       | 개인(원)  | 단체(원)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|
| 개 인     | 일반인       | 4,000  | 3,500 | ○ 이용시간 2시간<br>○ 단체 30인 이상<br>○ 회원권 매월기준 |
|         | 군인, 학생    | 3,500  | 3,000 |   |
|         | 어린이, 경로대상 | 3,000  | 2,500 |   |
| 선수훈련    | 일반인       | 2,000  |       |   |
|         | 군인, 학생    | 1,500  |       |   |
|         | 어린이, 경로대상 | 1,000  |       |   |
| 회 원     | 일반인       | 60,000 |       |   |
|         | 군인, 학생    | 50,000 |       |   |
|         | 어린이, 경로대상 | 40,000 |       |   |
|         | 체력단련실이용   | 10,000 |       |   |
|         | 월 강습료     | 10,000 |       |   |
| 수영복 대여료 | 수모        | 1,000  |       |   |
|         | 수경        | 1,000  |       |   |
|         | 수영복       | 2,000  |       |   |

## 6. 국민체육센터 이용료

(단위: 원)

| 시설별   | 월 회 원(일반인) |        | 수시이용료<br>(일반인)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| 개인         | 단체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실내체육관 | 30,000     | 20,000 | 2,000          | 단체는<br>10명이상 |
| 에어로빅장 | 30,000     | 20,000 | 2,000          | "            |
| 탁구장   | 30,000     | 20,000 | 2,000          | "            |
| 헬스장   | 35,000     | 25,000 | 2,500          | "            |
| 골프장   | 100,000    | 80,000 | 4,000          | 단체는<br>5명이상  |

- 이용시간 : 1명 당 1회 2시간
-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
- 월 회원 매월 기준
- 사천시 거주자 우선

# 사 천 시 공 보

제569호(8)

## 7. 중계 방송료

| 종 별      | 기 준 | 요 액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텔레비전 중계  | 1일  | 20,000원   | ○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|
| 라디오 중계   | 1일  | 10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녹화 또는 녹음 | 1일  | 중계방송료의 반액 |                     |

## 8.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

|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준             | 사 용 료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선전 또는<br>광고물의 게시                | 게시면적<br>1㎡당(월액) |        | ○ 1㎡ 미만은 1㎡로 한다.<br>○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.<br>○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         | 8,000원 |   |
| 2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,000원          |        |   |
| 에드벌론 및<br>유사물 계양<br>에 의한 행<br>위 | 1일 1개           | 3,000원 | ○ 1등급 :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.<br>○ 2등급 :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<br>한다.      |